

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2. 11. 18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제안이유

저탄소 청정에너지 확산과 탄소중립 목표,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도록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안 제20조의2(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) 개정

-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
 - 고속도로, 일반국도, 지방도, 군도,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→ 고속도로, 일반국도, 지방

도, 군도,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상 면도 이상의 도로에서
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(제1항제1호)

나. 안 제20조의 3을 제20조의 4로 하고, 제20조의3(태양광발전시설
개발행위 허가 기준 예외) 신설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2. 11. 18. ~ 11. 23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
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

1. 조례안 |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관련조문

의견

2. 의견

3. 기 타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 소

(전화 :

성명

)

(서명 또는 인)

담양군의회 의장 귀하

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“농어촌도로”를 “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상 면도 이상의 도로”로 한다.

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하고,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3(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예외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배제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
2.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
3.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2/3세대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(마을기업, 협동조합, 마을법인)(이하 ‘마을자립형공동체’라 한다)가 설치하는 경우
4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마을자립형공동체가 설치하는 경우

【별표 29】 “제20조의3”을 “제20조의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의2(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)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.	제20조의2(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고속국도, 일반국도, 지방도, 군도, <u>농어촌도로</u> 에서 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	1. ----- -- 「 <u>농어촌도로 정비법</u> 」상 <u>면도 이상의 도로</u> ----- --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제20조의3(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예외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배제한다.</u> <u>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</u> <u>2.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</u> <u>3.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</u>

<u>제20조의3</u> (생략) 【별표 29】 환경·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(<u>제20조의3</u> 관련)	<u>주하는 세대중 2/3세대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(마을기업, 협동조 합, 마을법인)(이하 ‘마을자립 형공동체’라 한다)가 설치하는 경우</u> 4. <u>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으로 마을자립형공동체가 설 치하는 경우</u> <u>제20조의4</u> (현행 제20조의3과 같 음) 【별표 29】 환경·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(<u>제20조의4</u> 관련)
--	--